

## 2. 복현실운영규정

제1조(목적) 이 임시규정은 가톨릭꽃동네대학교 국가시험 준비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단, 본 규정은 학칙상의 규정의 효력을 갖진 아니한다.(2021.6.22.개정)

제2조(국가시험 준비반) 국가시험 준비반은 지도교수 1인, 조교 1인 및 입실원으로 구성한다.

제3조(지도교수) ① 지도교수는 국가시험 준비반 사무를 관장하며 조교 및 입실원을 통할한다.

② 지도교수는 국가시험준비반의 운영에 관한 계획 및 일정을 매년 수립하여 교학처장을 경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2월 안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
제4조(입실자격) ① 국가시험 준비반에 입실하기 위하여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
1. 각종 국가시험 1차 합격자
2. 모의고사 성적 우수자
3. 입학성적이나 학과 성적이 우수한 자
4. 기타 입실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

제5조(입실원의 권리와 의무) ① 입실원은 국가시험 준비반 내의 시설물을 이용하고 기타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.

② 입실원은 국가시험 준비반 규정을 준수하고 국가시험 준비반 시설물을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용하여야 하며, 국가시험 준비반이 실시하는 모의고사 및 스터디 모임에 참여하여야 한다.

제6조(출석점검) ① 조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 5회 출석을 점검하고 매일 그 결과를 지도교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출석점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실시한다.

③ 입실원이 본인의 질병, 경조사, 수업 및 스터디, 기타 조교가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을 할 수 없는 경우 사전 또는 그 사후에 그 사유서를 조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경고조치) 지도교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경고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.

1. 국가시험 준비반 도서 및 잡지, 강의 테이프(비디오 테이프 포함) 반환 일시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
2. 무단으로 주3회 출석하지 아니한 자
3. 배정된 좌석으로부터 임의로 이동한 자
4. 면학분위기를 해하는 자
5.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

제8조(퇴실명령) ① 지도교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퇴실을 명할 수 있다.

1. 국가시험 준비반 시설물을 고의적으로 훼손 또는 파괴한 자
2. 3회에 걸쳐 경고조치를 받은 자
3.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교수의 소집에 응하지 않은 자

② 자의에 의하여 퇴실하거나 퇴실명령을 받은 자는 1년간 입실할 수 없다

부 칙

이 규정은 국가시험 준비반 내부규정으로 공고일로부터 시행하고, 국가시험 준비반과 관련하여 새로운 규정이 교무회의를 통과할 시 본 규정은 자동 폐기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